

『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5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19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 보완한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라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 제60조제1항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7조)

○ 검토 결과는

- 「도시개발법」 제정에 따른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